

건조(별도건조) 검사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건조기간+25일 (별도건조검사의 경우 25일)
------	------	------	------------------------------

건조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건조어선 내역	건조번호	선 적 항
	어선의 종류 []동력 []무동력	선 질 []강 []목 []강화플라스틱(FRP) []그 밖의 선질()
	어업의 종류	총 톤 수 톤
	배의 길이 미터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요청내역	수검요청일자 년 월 일
	수검장소
	비 고

「어선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의 건조(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조검사 제출서류 가. 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나. 예비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2. 별도건조검사 제출서류 별도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유의사항

□ 건조검사 대상 어선

○ 다음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 무동력어선
-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서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어선

□ 별도건조검사 대상 어선

-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어선
- 건조검사를 받지 않은 모든 어선

□ 건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

- 선체, 기관, 배수설비, 조타·계선·양묘설비 및 전기설비
- 만재흡수선(해당 어선만 검사받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건조검사는 해당 어선이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 건조검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기본설계도면 외의 설계도면과 예비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은 해당 어선시설의 공사착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건조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의 정기검사를 생략합니다.

처리절차

